

# 要約書의 公報 掲載에 앞서

鄭 東 瑩

〈특허청 자료과장〉

## 目 次

- I. 머리말
- II. 요약이란
- III. 요약제도의 취지
- IV. 요약서의 법률적 위치
- V. 요약서의 작성 요령
- VI. 외국의 제도
- VII. 요약서의 공보 게재
- VIII. 부실요약서로 인한 문제점
- IX. 개선 대책
- X. 맺는말

〈이번호에 전제〉

### I. 머리말

현행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서는 등록 출원서에 발명(고안)의 개요를 요약한 요약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요약서를 기술정보자료로서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 발간하는 공용특허 및 공개실용신안 공보에 이를 게재키로 하고 공보게재에 앞서 요약제도를 간단히 소개코저 한다.

### II. 요약이란?

요약이란 발명(고안)의 개요를 짧은 문장으로 게재한 것을 말하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적 분야 그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그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발명의 용도업을 간단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으로서 우리 특허법(90. 1. 13개정 법률 제4207호) 및 실용신안법에서는 1990. 9. 1 이후 출원하는 특·실 출원서에 요약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III. 요약제도의 취지

현대산계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개발기술을 권리화하고자 하는 특허출원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기술의 내용도 고도화 복잡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방대한 특허 자료의 관리와 효율적 이용방안이 다각적으로 연구·검토되고 있다.

우리 특허청(열람실)에도 각종 공보류 23만여권과 상당량의 CD-ROM, 마이크로 필립 등 전자자료를 소장하고 일반열람인 및 심사심판 업무에 제공하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국내외 정보자료의 보관·관리 문제 및 이들 많은 자료의 신속한 검색 문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발명특허의 경우는 1건당 평균 10면에 달하고 첨단분야에 있어서는 기술내용이 더욱 복잡, 방대화 되고 있어 선행기술 검색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허공보 등의 내용을 조사할 경우 요약문이 기재된 Front page를 이용하여 발명의 개요를 신속히 검색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선진 여러나라는 오래전부터 주로 공개공보에 요약문 및 선택 도면을 게재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도 금년 4. 1부터 특·실 공개공보에 요약서를 게재키로 한 것이다.

#### IV. 요약서의 법률적 위치

요약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의 일부로 구성되는 것이지만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특허법 제43조)

#### V. 요약서의 작성요령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요약서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 ※ 요약서 기재요령

1. 요약서는 가능한한 간결하게 기재합니다.(될 수 있는 한 10줄 이상 20줄 이내가 되도록 작성합니다)

2. 요약서에는 기술정보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나. 그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다. 그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라. 발명의 중요한 용도

##### 한·일 요약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시 행	'90. 9. 1 (특허법 제42조)	'90. 12. 1 (일본 특허법 제36호)
작성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약서는 가능한한 10줄 이상 20줄 이내로 작성</li> <li>• 기술정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기술적 과제, 발명의 중요한 용도를 기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자수는 400자 이내로 간결하게 기재</li> <li>• 발명의 목적, 구성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이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되 기자사항 앞에 「목적」 「구성」을 표현한다.</li> </ul>

3. 요약서는 명세서의 청구범위 다음 도면 앞에 철하며, 청구범위의 최종 면수에 연속하여 면수를 표시합니다.

4. 주요한 기술적 특징으로서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요약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 )에 인용부호를 붙입니다.

5. 요약서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불확실한 효과나 용도에 관한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화학식이나 수식 및 표를 바르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지를 가로(횡)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용지를 가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용지는 화학식이나 수식 및 표의 상단을 용지의 우측이 되도록 하여 세로(縱)로 하여 철합니다.

#### VI. 외국의 제도

요약제도는 영·독·불·일·미 등 선진 각국은 물론 EPO, WIPO 등 국제기구도 모두 채택하고 있으며 공개제도가 없는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나라가 요약서를 공개공보에 게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 보다 몇개월 늦게 시행하였으나 이미 공보에 게재(92. 7. 1부터)하고 있으며 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권제도나 세부적 운영면에까지 충분한 연구검토 등 대비가 있었고 지금도 요약서의 작성요령, 요약제도의 취지 등을 내용으로 한 홍보자료를 제작 년중설명회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의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를 간단히 살펴본다.

구 분	한 국	일 본
보정제도	• 요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만 보정지시. (내용불분)	• 요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시 되는 경우에도(예 : 특허청구 범위와 동일하게 표기, 외국어, 표수식 등으로만 표기되어 발명의 개요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보정 지시.
직권수정	• 명문 규정 없음.	• 특허법에 직권 수정 근거 규정 마련 • 요약서 수정 인력 확보
공보게재	• 요약서의 공보게재에 관한 명시 규정 없음. 다만, 공개공보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허출원 공개에 관계되는 사상”라고 규정 하였음.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자목)	• 공개특허 및 공개실용 공보에 게재토록 명시
게재시기	• '93. 4. 1 게재(예정)	• '92. 7. 1

### Ⅲ. 요약서의 공보게재

1. 요약서는 선행기술 및 권리정보의 신속한 파악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그 중에도 공개공보에 게재하여야만 비로서 이용가치가 제고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청에서는 1993. 4월 공개분부터 공개 특·실 공보에 이를 게재키로 하고 게재

시기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 게재공보 : 공개특허공보, 공개실용신안 공보

• 게재시기 : 93. 4월 공개분(91. 9 출원분) 부터

• 게재위치 및 게재 방법

- 서지적 사항-발명(고안)의 명칭-요약 순으로 게재(제1면에 게재)

- 청구범위는 2면에 게재

#### • 제1면 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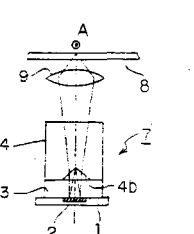
<b>① 대한민국특허청 (KR)</b>		제 호
⑤1	<b>⑫ 공개특허공보 (A)</b>	
④3 공개일자		①1
②2 출원일자		②1
⑦2 발 명 자		
⑦1 출 원 일 대리인		
⑤4 발명(고안)의 명칭		
⑤7 요 약	(요약문)	(도 면)

## 2. 외국의 게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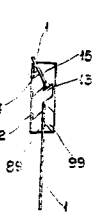
선진외국이나 WIPO 등 국제기구도 DATA 관리상의 편의성을 도모키 위하여 제

1면에 서지사항 발명의 명칭 및 요약서를 게재하여 Front page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제이기도 하다.

## 일본 공개 공보

115) 日本国特許庁 (J.P.T.)		112) 公開特許公報 (A)		111) 特許出願公開番号	
		特開平4-372729			
		443) 公開日 平成4年(1992)12月25日			
(51) Int. Cl. <sup>7</sup>	識別記号	特許管理番号	F 1	優先表示国	
G 1 1 B 7/06 7/135	A 2106-SD 2 8947-SD				
審査請求 未請求 請求項の数4(全6頁)					
(12) 出願番号	特願平3-177187	(71) 出願人	59000387 日本電気ホーム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 大阪府大阪市中央区城見一丁目4番24号		
(22) 出願日	平成3年(1991)6月21日	(72) 発明者	小名山 勇一 大阪府大阪市中央区城見1丁目4番24号 日本電気ホームエレクトロニクス株式会社内		
		(74) 代理人	菅野士 加藤 延彦		
(54) 発明の名称・異種型光学素子および異種型光ビームアップ					
(51) 要約	<p>【目的】 光ビームアップの各光学素子を集積して小型軽量化、コストダウンを図り、異種型光ビームアップを実現する。</p> <p>【構成】 シリコン基板上に光線出力部2、基板ガラス3を貼り合わせた積層プリズム4、レーザダイオードを一面に設ける。積層プリズム4はハーフミラー面をもち、下面はV溝形状2をもち、レーザダイオードから発せられたレーザ光はハーフミラー面で反射して光プリズム4内から、光プリズム4で反射した光はプリズム一面を通過し、基板はV溝形状部4を通過して、光線出力部2を照射する。V溝形状部4で反射した光はプリズム4に伝播される。このV溝形状部4の端面を研磨したプリズム一面によりウェーブガイドエフェクトが行われる。</p>				
					

## WIPO 공개 공보(PCT)

PC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nternational Bureau	
INTERNATIONAL APPLICATION PUBLISHED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51)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5 A47K 3/02, E04F 13/08	A1	(11) International Publication Number: WO 91/01108	(43) International Publication Date: 7 February 1991 (07.02.91)
(21)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PCT/US90/03941	(22) International Filing Date: 13 July 1990 (15.07.90)	(81) Designated States: AT (European patent), BE (European patent), CA, CH (European patent), DE (European patent), DK (European patent), ES (European patent), FR (European patent), GB (European patent), IT (European patent), JP, LI (European patent), NL (European patent), SE (European patent), US.	
(30) Priority data: 384,55	24 July 1989 (24.07.89)	US	Published With international search report.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time limit for amending the claims and to be republished in the event of the receipt of amendments.
(60) Parent Application or Grant: (65) Related by Continuation: US Filed on:	24 July 1989 (24.07.89)	38,557 (CIP)	
(71)(72) Applicant and Inventor: WILLIAMS, James (US/US); 12 Fred Street, Burlington, MA 01803 (US).			
(64) Title: 2) SPGASIBLE TUB-SHOWER OF SHOWER STALL WALL LINER			
(57) Abstract: A magnetic fastening device for releasably attaching a shower liner to a shower wall comprising a wall mounting member (89) having a neck flat portion adapted for attachment to a shower wall, a hinge or hook (12) directed away from the member into the shower area and the upper portion (14) sloping toward the rear of the member and in the direction of the shower wall, and an unmounted member (91) for mating with the wall mounting member bearing an aperture (16), the protruding end or hook on the wall mounting member and its upper portion (15) sloping toward the shower wall to close; said wall mounting member; the wall mounting and unmounted members being magnetically attracted one to the other. The shower liner (11) is a flexible substantially rectangular water impervious sheet with weakened portions (2) in the bottom portion for the liner to be opened; and is placed against the wall around water handles and spouts and has spaced apart structures (12) along its top portion. The liner can also have at its lower portion a material (14) which assumes the contour of the surface against which it presses and retain tenses contact when the pressure is released. A kit can be made comprising the magnetic fastening device with a shower liner.			
			

## 3. 요약서의 활용

우리 공개공보에는 요약서가 게재되지 않고 서지적 사항, 발명의 명칭 및 청구범위만 게재하고 있으므로 선행기술 조사를 위한 Front page로서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제1면에 청구범위가 아닌 요약서를 게재케 됨으로서 DATA 관리의 편의성이나 DATA의 추출 및 자료의 검색시 Front page로서 활용가치가 제고되고 2차정보자료의 자료원으로서 이용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다만 요약 내용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Ⅲ. 부실요약서로 인한 문제점

요약서는 선행기술의 신속한 검색을 목적으로 전문 내용을 초록화 한 것이므로 이를 정보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 명료하게 작성되어야만 이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범시행 이후 접수된 출원서(요약서)를 표본 조사해본 결과 부실요약서를 상당수 발견할 수 있어 특허문헌으로서의 활용가치가 크게 의문시 되고 있다.

## 1. 부실내용사례

- 특허청구범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경우
  - 1줄 또는 2줄 정도로 지나치게 짧게 작성하여 발명의 개요를 파악할 수 없는 사례
  - 발명의 내용을 잘못 요약한 사례
  - 발명의 개요를 판단하는데 꼭 필요한 대표도면(선택도)을 게재치 않을 경우

## 2. 원인분석

필자가 분석에 의하면 부실하게 작성된 요약서는 주로 출원인이 내국인인 경우와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개인 출원인 경우가 제일 많으며 요약제도가 정착된 선진국에서 출원한 경우는 비교적 충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행초기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출원인의 인식부족이 첫째 원인이고 둘째 원인은 부실요약서에 대하여 보정조치할 수 없는 제도상의 미비 및 직권수정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 3. 불이익의 발생

방대한 특허자료를 전문으로 찾아보기란 불가능한 것이므로 일차로 초록에 의하여 선행기술을 검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공보에도 요약문이 게재됨으로서 DATA관리, DATA추출, 검색에 Front page로서 이용에 제공될 것이므로 요약내용이 부실할 경우 발명자나 출원인의 신뢰는 물론 발명의 내용이나 권리의 핵심이 잘못 전달되어 불이익의 발생 등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 IX. 개선대책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90. 1. 13 개정 공포된 특허법(법률 제4207호)에서 도입한 요약제도는 시행초기 출원인의 이해부족 및 제도상의 미비로 본래 목적달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요약서의 이용 극대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출원인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요약제도의 적극적 홍보

둘째, 제도의 보완

셋째, 요약서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전담 인력 확보.

그러나 제도의 개선에 앞서 출원인 스스로 요약서 작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요약서는 특히 등록을 받는데 직접 관련이 없고 특허정보로서만 이용되므로 등록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관심밖의 부속서류로 판단, 이를 형식만 갖추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러나 요약서는 2차 정보자료로서 활용해야 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그 내용이 잘못 작성될 경우 발명의 내용과 권리의 핵심을 그릇 판단하게 되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산업계 변리사 및 출원인을 대상으로 요약제도의 중요성, 작성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고 또한 초록으로 이용이 불가한 부실요약서의 보완이나 직권수정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이다.

## X. 맺는말

방대한 양의 특허정보 자료를 짧은 시간과 적은 노력으로 신속하게 검색하기 위하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의 효율적 이용이 크게 기대되고 이를 위하여는 그 내용이 명료하고 정확해야 할 것인바 특허청에서는 여러 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지만 부실요약서를 보완하거나 직권 보완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출원인 스스로 요약서를 최선을 다해 작성해 주어야만 정보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제고될 것이며 이미 출원된 것이라도 다시한번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진 보정하여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